
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한신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3007호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
보고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

피학대 동물을 정의하고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
필요시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
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
동물보호·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
동물보호·복지 수준을 높이하고자 한 내용으로
우리국은 원안에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